##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25

발의연월일: 2020. 8. 20.

발 의 자:임오경·서삼석·장철민

김영주 • 전용기 • 김경만

박성준 · 윤후덕 · 김민철

이수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)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됨. 코로 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로 관광진흥의 기반약화가 우려되면서,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관광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관광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관광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에 앞장서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관광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관광진흥계획의 수립) ①	제3조(관광진흥계획의 수립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8. 관광시설의 감염병에 대한
	<u>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</u>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